

어학졸업인증제 운영규칙

제정 2008. 12. 19
개정 2009. 12. 17
개정 2010. 3. 25
개정 2010. 12. 16
개정 2012. 7. 19
개정 2014. 11. 26
개정 2015. 2. 10
개정 2016. 2. 1
개정 2017. 1. 31
개정 2018. 3. 5
개정 2019. 4. 17
개정 2020. 12. 30
개정 2022. 2. 25
개정 2022. 9. 23
개정 2023. 1. 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주대학교 학칙」 제50조 제3항에 따른 어학졸업인증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및 범위) ① 신입학자의 경우에는 2009학년도부터, 편입학자의 경우에는 2011학년도 3학년 편입생부터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면제할 수 있다.

1.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자
2. 체육특기자 전형으로 입학한 자
3.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자. 단, 순수외국인(부모 모두 외국인)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자는 [별표2]로 따로 정한다.(개정 2020.12.30.)
4. 특례편입학자
5. 학사편입학자
6. 군위탁자
7. 학·석사 연계과정으로 본 대학교 대학원에 진학이 확정된 자
8. 의과대학 입학자
9. 간호학사 특별과정으로 편입학한 자 (신설 2010.12.16.)

10. 일반전형 입학자 중 중증장애인 (신설 2014.11.26.)
 11. 재직자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자 (신설 2017.1.31)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면제요건 이외에 단과대학장이 따로 인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졸업사정회의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면제할 수 있다.

제3조(졸업인증기준) ① 학과 및 전공별 어학졸업인증 기준 점수는 [별표1]과 같다. (개정 2009.12.17) (개정 2010.3.25) (개정 2010.12.16) (개정 2012.7.19) (개정 2014.11.26) (개정 2015.2.10.) (개정 2016.2.1) (개정 2018.3.5) (개정 2019.4.17.) (개정 2020.12.30.) (개정 2022.2.25.) (개정 2022.9.23.) (개정 2023.01.13.)
②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자는 별도로 지정하는 대체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대체과목은 6학기까지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자가 공인어학능력성적표 (입학이후 성적표에 한함)를 2회 이상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7학기부터 수강할 수 있다.

제4조(시행절차) ① 어학졸업인증 기준을 충족한 자는 졸업예정학기까지 소정의 어학졸업인증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어학졸업인증 신청 기간은 매 학기 초에 공고하며, 공인어학능력성적표는 본 대학교 입학이후 성적표에 한하여 인정한다. 다만, 편입학자의 경우에는 본 대학교 입학 전 2년 이내에 취득한 공인어학능력성적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인정한다.
③ 어학졸업인증을 취득한 자는 학적부 및 성적증명서에 등재하여 표시한다.

제5조(인증 미 취득자의 학적유지) 졸업이수학점을 충족하였으나 졸업하는 마지막 학기까지 어학졸업인증을 취득하지 못한 자는 어학졸업인증 자격 취득시까지 학적 유지를 위하여 본 대학교가 정한 소정의 학적유지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보칙) 이 규칙에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08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09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0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0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2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조 제1항 제10호는 2015년 2월 졸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영대학 졸업인증 시험 종류 변경에 대한 경과조치) 제3조 제1항에 의거 개정한 별표의 경영대학 졸업인증 시험 기준은 2015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하며, 2014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종전의 기준인 TOEIC 730, TEPS 605, TOEFL-PBT 534, TOEFL-CBT 200, TOEFL-IBT 72, G-TELP-level 2 67, G-TELP-level 3 89, TOEIC Speaking IM3, OPIC IM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보컴퓨터공학과 및 소프트웨어융합학과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제3조 제1항에 의거 개정된 별표에서 학과 폐지에 따라 삭제한 정보컴퓨터공학과 및 소프트웨어융합학과의 졸업인증 시험 기준은 2015학년도 입학자까지 종전의 기준인 TOEIC 730, TEPS 605, TOEFL-PBT 534, TOEFL-CBT 200, TOEFL-IBT 72, G-TELP-level 2 67, G-TELP-level 3 89, TOEIC Speaking IM1, OPIC IL을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7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어학졸업인증 기준 추가에 따른 경과조치) 제3조 제1항에 의거 개정된 별표에서 추가된 어학졸업인증기준은 2018학년도 신입학자 및 2020학년도 편입학자부터 적용하며, 2017학년도 입학자 및 2019학년도 편입학자까지는 종전의 어학졸업인증기준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보통신대학 소프트웨어학과 및 경영대학 어학졸업인증 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제3조 제1항에 의거 개정된 별표의 정보통신대학 소프트웨어학과 및 경영대학 졸업인증시험 기준은 영어공인인증 점수에 한하여 신입생의 경우에는 2009학년도부터, 편입생의 경우에는 2011학년도 3학년 편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기획팀-1908호 : 2020.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어학졸업인증 적용대상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제2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개정된 [별표2]의 순수외국인 특별전형 ‘한국어트랙’ 입학자에 대한 어학졸업인증기준은 2021년 2월 졸업생부터 적용하며, ‘영어트랙’ 입학자에 대한 어학졸업인증기준은 신입학자의 경우에는 2021학년도부터, 편입학자의 경우에는 2023학년도 3학년 편입생부터 적용한다.

제3조(어학졸업인증 기준 추가에 따른 경과조치) 제3조 제1항에 의거 개정된 [별표1]에 추가된 어학졸업인증기준과 2018년 3월 5일자 개정에 의거 [별표1]에 추가된 어학졸업인증기준은 신입생의 경우에는 2009학년도부터, 편입학자의 경우에는 2011학년도 3학년 편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기획팀-2680호 : 2022.02.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프트웨어융합대학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제3조 제1항 별표1의 주관대학 변경은 2022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기획팀-1558호 : 2022.09.23.>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기획팀-2352호 : 2023.01.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소재공학과 학과명 변경 및 첨단학과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제3조 제1항 별표1의 학과명 변경 및 학과 신설에 관한 사항은 2023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제3조(미디어학과 학과명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제3조 제1항 별표1의 학과명 변경에 관한 사항은 2023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별표1] 학과 및 전공별 어학졸업인증 기준 점수

대학	학과(전공)	TOEIC	TEPS		TOEFL			G-TELP		TOEIC Speaking	(NEW) TOEIC Speaking	OPI c	IEL TS	일본어	중국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베트남어
			NEW TEPS	TEPS	PBT	CBT	IBT	level 2	level 3										
	불어불문학과															DELF B1			
	사학과										JLPT N2 JPT 540	(신)HSK 5급				-			
	문화콘텐츠학과										-	-							
사회과학대학	경제학과	730													-	-			
	행정학과		329	605	534	200	72	67	89	Level 6	IM3	IM	5.5		JLPT N2 JPT 540	(신)HSK 5급			
	심리학과														-	-	-	-	
	사회학과														JLPT N2 JPT 540	(신)HSK 5급			
	정치외교학과																		
간호대학	간호학과	730	329	605	534	200	72	-	-	Level 5	IM1	IL	5.5	-	-	-	-	-	
약학대학	약학과	730	329	605	534	200	72	-	-	Level 5	IM1	IL	5.5	-	-	-	-	-	

주) 상기 공인 어학능력 기준 중 1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별표2] 순수외국인(부모 모두 외국인)특별전형 어학졸업인증 기준 점수

구분	트랙	TOEFL			TEPS		IELTS	CEFR	TOPIK
		PBT	CBT	IBT	NEW TEPS	TEPS			
순수외국인 특별전형	한국어트랙	-	-	-	-	-	-	-	TOPIK 4급
	영어트랙	530	197	71	326	600	5.5	B2	-

주) 순수외국인전형 입학자는 교육부 공표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표준업무처리요령에 따라 졸업 전까지 입학 트랙별 기준점수 중 1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단, 영어트랙 입학자는 표의 기준에 상응하는 국가공인민간영어능력 평가시험 점수로 대체 가능함.